#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9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 박수영·송언석·이종욱

이인선 · 서천호 · 박수민

최은석 · 강승규 · 구자근

권성동 • 박성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 조의5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 과세 하도록 함.

- 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공제율 상향(안 126조의2 개정)
  - 1) 2023년 과세기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 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46조의7"을 "제46조의7,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

자 · 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3 및 제100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

- 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 액보다 증가하였을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 1. 주주화워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 균금액 × 1.05)

- 2. 주주환원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0 조의3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

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 큰 금액
    - 1)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

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 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 율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

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 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 과세특례 배당소득 금액(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다.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9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 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 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 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매년 최초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의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 환원금액 명세서와 과세특례 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주주환원 확대기업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과 제8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제8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연간합계액"을 각각 "합계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대가 (나목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은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영세소상공인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 인사업자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 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 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 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3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을 배당하거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3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 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 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 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영세소상공인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5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	
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u>제46조의7</u>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	제100조의33
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8조의5(중소기업 설비투자자

데) ①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

-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 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절의5 <u>투자·상생협력 및 주</u> <u>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u>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

제10절의5 <u>투자·상생협력 촉진</u> 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 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회사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소가만 해당한다)을 통하여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보다 증가하 였을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 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 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금액의 평균금액 × 1.05)

- 2. 주주환원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 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0조의33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

<신 설>

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 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

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u>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u>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 한 세액
  - <u>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u> 큰 금액
    - 1)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금액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 득금액을 더한 금액 에 대한 산출세액
      - <u>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u> <u>「소득세법」 제129</u>

조제1항제1호라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 다음 가)와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

     여 「소득세법」 제1

     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다.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지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 은 법 제16조제1항 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 같은 법 제129 조제1항제1호라목 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 한 다른 종합소득금 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 득세법」 제17조제1 항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 호라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 과 이자소득등 및 같 은 법 제17조제1항제 8호에 따른 배당소득 을 제외한 다른 종합 소득금액에 대한 산 출세액을 합산한 금 액(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 액
  - <u>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u> 액을 더한 금액
    -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 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 과세특례 배당소득 금
       액(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제 외한 금액에 「소득세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u>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u> <u>더한 금액</u>

-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한도로 한다): 100분의 9
  - 나) 「소득세법」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같은 법 제129 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 다) 「소득세법」 제127 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

소득등: 같은 법 제12 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해 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 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매년 최초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의 제1항 에 따른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 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주주환원금액 명세서와 과세특례 배당소득 원천징수명 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 확대 기업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6조	:의2(신	]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자	1) (1	) (현행
과 깉	음)			

2
<u>2025년</u>
한정한다)과
제8호의 금액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 4. (생략)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u>직불카드등사용</u>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 다. (생 략)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 —
<u>제2호, 제3호</u>	<u>및</u>
제8호	
1. ~ 4. (현행과 같음)	
5	
	- —
<u>직불카드등사</u>	용.
분, 제8호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 —
6	- —
<u>2025년 1월 1</u>	<u>일</u>
부터 2025년 12월 31일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 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 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 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신 설> --- 100분의 20

8.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대가(나목의 경우에는 수 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 만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 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문화체 육사용분은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영세소상공인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 ③ ~ ⑩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지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 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 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 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 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다.

####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③ ~ ⑩ (현행과	같음)	
세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제100조의33		
		. — — —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 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 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 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 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 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 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 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 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 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 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

②
<u>제99조의12, 제10</u>
<u>제99조의12, 제10</u> <u>0조의33</u>
<u>0</u> 조의33   ③ (현행과 같음)
<u>0조의33</u>
<u>0</u> 조의33   ③ (현행과 같음)
<u>0</u> 조의33   ③ (현행과 같음)
<u>0</u> 조의33   ③ (현행과 같음)

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 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 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 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 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 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저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99조의
12, 제100조의33
1. ~ 3. (현행과 같음)
세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 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

1.·2. (현행과 같음)
3
제99
<u> 조의12, 제100조의33</u>

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 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 4.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①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u>제99조</u>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②
<b>300</b>
<u>제99조</u>
의12, 제100조의33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민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③ (생략)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③ (현행과 같음)

(연행과 살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 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 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 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 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 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제10 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 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 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 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 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 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 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 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 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 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 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 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 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 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u>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u> 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0조의33,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 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 <u>6</u>,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 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 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 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 <u>한다.</u>

③ (생 략)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 <u>한다.</u>

③ (현행과 같음)